



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7. 7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
과 장 : 배 호 열
사무관 : 김 보 람
전 화 : 500-1793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있음(6P)

이 자료는 2011년 7월 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,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본격추진
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
- 삶의 질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지정 및 범정부적 복지정보 연계 근거도 마련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

- 국가 및 지자체는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
-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·개선 등 노력
- ※ 올해는 9개 부처 9개 도에서 자율과제 1개씩 분석·평가, 전문연구기관에서 2개 과제 심층 분석·평가 실시

◇ 삶의 질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용과 농어업인 복지정보의 범정부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

-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(본회의 통과)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.

-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·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·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- 예를 들면, 우리보다 농어촌영향평가(Rural Proofing)를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는 교육개혁시책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취업기회 부족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농어촌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통수단과 시간표를 알려줄 담당자 지정, e-러닝 확대, 공공부문의 고용기회 확대 등 해결책을 마련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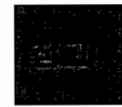
- 올해부터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연구기관은 중요 정책에 대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
- 9개 부처 9개 도에서는 소관정책 중 자율과제를 1개씩 선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하고,
- 전문연구기관(한국농촌경제연구원)에서는 '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', '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' 등 2개 과제를 심층 분석·평가하기로 하였다.
- 평가결과는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한편, 법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,

○ 농어업인 복지지원 업무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, 처리기간 단축 및 중복·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농림수산식품부 정황근 농어촌정책국장은 “농어촌영향평가 제도란 특정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거주,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특성과 농어촌의 경제·경관·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”라고 설명하며, 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

□ (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용근거 마련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·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45조)

○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, 불리한 접근성 등의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분석·평가하여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

※ 농어촌영향평가 추진현황

- ◇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'10~'14)에 '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'으로 도입('09.12월)
- ◇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서 '농어촌영향평가 운용방안'과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을 심의·의결('11.6월)
- ◇ 올해는 9개 부처, 9개 도에서 자율과제 1개씩 선정·평가하고, 위원회가 선정한 2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(한국농촌경제연구원)에서 전문평가 실시
 - 전문평가 대상과제(2개) : 여성 경제활동 확대,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

□ 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)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·공립 연구기관, 출연 연구기관 등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)

○ 농어촌서비스기준,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어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의 필요

• 위원회 : 위원장(국무총리), 11개 부처장관 및 국무총리실장, 민간위원 9명

※ 전문지원기관의 수행업무

- ◇ 매년 실시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·평가
- ◇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의 점검·분석
- ◇ 농어촌영향평가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 지침의 검토 및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원
- ◇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

□ (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)

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인 복지 관련 사업의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자료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7조)

○ 「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」의 일환으로 정보의 요청권한, 전산망의 연계, 정보 공유

○ 부처간 복지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·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청자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의 효과 기대

※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 개요

- ◇ (추진배경) 부처별·사업별 분산된 복지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중복/부정수급을 방지, 신청자의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효과 기대
- ◇ (복지사업 현황) 13개 부처 292개 복지서비스 시행('10.6월 기준)
 - 현금성 사업(89개)과 비용감면·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(203개)
 - 우리부 사업 :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,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, 농어촌주택개량 자금 지원, 연금보험료 지원, 건강보험료 지원, 취약농가 인력지원, 학교우유급식사업, 친환경농업바우처교육
- ◇ (주요 내용) 각 부처 복지전산망 연계를 통한 복지정보의 공동 활용, 부처별 복지사업 지급실적의 통합관리체계 구축, 관련 법/제도 정비

※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5조(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·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·운용할 수 있다.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·평가의 방법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46조(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·공립 연구기관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1. 시행계획의 점검·평가 2.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·분석 3.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지원

<신 설>

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

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(이하 “전문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(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농어촌영향평가 제도

□ 개요

- (개념) 정책 입안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, 차별적 영향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·최소화하는 제도
- (필요성) 인구 분산·원거리 거주, 접근성 불리 등의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시,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 가능성
- (추진 근거) 삶의 질 위원회에서 제2차 5개년 계획('10~'14)에 도입
 - 삶의 질 위원회 : 위원장(총리), 11개부처 장관 및 국무총리실장, 민간위원 9명

□ 추진내용

- (평가대상)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시·도 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
- (평가유형)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실시
 - 자체평가 : 각 기관의 공무원이 지침에 따라 직접 평가
 - 전문평가 : 삶의 질 위원회가 선정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심층분석
- (고려사항)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농어촌특성(접근성, 인구밀도 등), 농어촌영향(지역경제, 경관, 전통문화 등)을 고려

□ 추진절차

- 자체평가 : 평가대상 정책선정(각 행정기관) → 평가계획 수립 및 제출 → 평가수행 →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전문평가 : 평가대상 정책선정(삶의질위원회) → 평가계획 수립·제출(전문연구기관) → 결과보고서 작성·제출(전문연구기관)

□ 농어촌영향평가업무 흐름도

